

의안번호	2204997
의 퇴 인	한기호의원
회 답 일	2025.2.17.
추계번호	24D460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무공·보국포장 수상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할 경우, 생활조정수당, 보훈병원 진료, 대부지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교육지원 등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647억 5,000만원(연평균 129억 5,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생활조정수당	5,765	6,781	7,995	9,433	11,127	41,101	8,220
보훈병원 진료	1,424	1,484	1,547	1,613	1,680	7,748	1,550
대부지원	1,392	1,410	1,428	1,446	1,463	7,139	1,428
보훈재가복지서비스	1,434	1,522	1,612	1,739	1,869	8,176	1,635
교육지원	110	112	117	121	126	586	117
합계	10,125	11,309	12,699	14,352	16,265	64,750	12,9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무공포장수상자, 보국포장수상자를 이 법의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음	의무규정
2	안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무공포장수상자, 보국포장수상자 및 그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	재량규정
3	안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무공포장수상자, 보국포장수상자 및 그 배우자를 취업지원 대상에 포함	재량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	-
2	안 제2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	-
3	안 제29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	지원단가, 대상자 중 지원비율(0.1%), 지원단가(2023년 기준 31만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재정소요가 크지 않아 추계대상에서 제외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제4조에 따라 무공포장수상자, 보국포장수상자를 이 법의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법 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42조(진료), 제46조(대부), 제63조(양로지원), 제63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63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지원대상이 되어 추가재정소요 발생
 - 양로지원의 경우, 양로지원 시설로 보훈원을 운영(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인원과 상관없이 매년 양로지원비를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추가 입소한다고 하여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대상에서 제외
 - 또한, 요양지원 보조의 경우, 지원단가, 대상자 중 지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¹⁾가 크지 않아 추계대상에서 제외
- 또한, 개정안 제22조 및 제29조에 따라 무공포장수상자, 보국포장수상자 등에 대해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 다만, 취업지원의 경우, 지원단가, 대상자 중 지원비율²⁾을 고려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가 크지 않아 추계대상에서 제외
- 무공·보국포장 수상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자 수는 무공·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 등록률을 적용하여 추정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

1) 국가보훈부는 무공·보국포장 수상자의 교육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2026~2030년까지 3,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함

2) 0.1%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무공·보국수훈 취업지원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119,654명) 중 최근 5년간 취업능력개발비를 지원받은 평균 지원인원(103명)의 비율

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계기간은 2026~2030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무공포장 및 보국포장 수상자 현황

- 개정안은 무공포장 및 보국포장 수상자를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공포장 및 보국포장 수상자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인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진료비 지원, 대부 지원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현행법³⁾은 무공훈장 및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함

[표 2] 무공훈장 및 보국훈장 서훈기준

	무공훈장	보국훈장
상훈법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接敵)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
정부포상업무 지침	-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군인 및 군무원

자료: 「상훈법」, 2024년 정부포상업무 지침

- 개정안은 훈장 다음가는 훈격인 무공포장 및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려는 것임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 ~ ⑥ (생략)

[표 3] 무공포장 및 보국포장 서훈기준

	무공포장	보국포장
상훈법	국토 방위에 헌신·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
정부포상업무 지침	-	재직기간이 30년 이상 33년 미만인 군인 및 군무원

자료: 「상훈법」, 2024년 정부포상업무 지침

-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1948년 이후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로서 국가유공자 등록률을 적용하여, 무공포장 및 보국포장 국가유공자 등록자 수를 추정

[표 4] 무공훈장 및 보국훈장 포상 인원 및 국가유공자 등록 인원: 2024년

(단위: 명,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계
포상 인원		213,027	68,544	281,571
국가유공자	본 인	12,079 (5.7)	42,741 (62.4)	54,820 (19.5)
	배우자	28,422 (13.3)	4,837 (7.1)	33,259 (11.8)
	기타유족	49,049 (23.0)	1,880 (2.7)	50,929 (18.1)
	합계	89,550 (42.0)	49,458 (72.2)	139,008 (49.4)

각주: ()안은 포상인원 대비 국가유공자 등록자 비율임

자료: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5] 무공포장 및 ·보국포장 포상 인원 및 국가유공자 등록 추정 인원: 2023년

(단위: 명, %)

		무공포장	보국포장	계
포상 인원		10,472	20,451	30,923
국가유공자	본 인	594 (5.7)	12,752 (62.4)	13,346 (19.5)
	배우자	1,397 (13.3)	1,443 (7.1)	2,840 (11.8)
	기타유족	2,411 (23.0)	561 (2.7)	2,972 (18.1)
	합계	4,402 (42.0)	14,756 (72.2)	19,159 (49.4)

각주: ()안은 포상인원 대비 국가유공자 등록자 비율임

자료: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국가유공자 등록인원에 통계청의 연령별 사망률과 최근 5년간 신규 수상인원⁴⁾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의 무공포장 및 보국포장 국가유공자 등록자 수를 추정

[표 6] 무공포장 및 보국포장 포상 인원 및 국가유공자 등록 인원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무공 포장	본인(A)	456	408	361	314	269
	지원배우자(B)	390	374	357	338	317
	수권배우자(C)	1,314	1,261	1,202	1,137	1,067
	선순위유족(D)	2,555	2,614	2,680	2,753	2,832
	본인 사망자 수(A×사망률)	43	43	42	41	39
	배우자 사망자 수((B+C)×사망률)	59	66	73	79	86
	소계(A+C+D)	4,325	4,283	4,243	4,204	4,168
보국 포장	본인(①)	13,125	13,246	13,366	13,484	13,601
	지원배우자(②)	11,012	11,113	11,214	11,313	11,411
	수권배우자(③)	1,904	2,048	2,188	2,324	2,456
	선순위유족(④)	683	721	760	797	834
	본인 사망자 수(①×사망률)	150	146	143	140	137
	배우자 사망자 수((②+③)×사망률)	39	38	38	37	36
	소계(①+③+④)	15,712	16,015	16,314	16,605	16,891
합계		20,037	20,299	20,557	20,809	21,059

주: 1) 지원배우자는 유공자 생존시에도 지원하는 경우이며, 수권배우자는 유공자 사망시 지정되며, 지원배우자수는 통계청의 연령대별 유배우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2) 2025년 1월 기준 무공수훈자 평균연령 84세 및 보국수훈자 평균연령 74세, 배우자와의 평균 연령 차이 3세로 가정하여 통계청의 사망률과 최근 5년간 평균 신규 수상자 수를 적용하여 추정
 3) 수상자 본인 사망자 수는 다음년도 수권배우자 증가로, 지원배우자와 수권배우자를 합한 배우자 사망자 수는 다음연도 선순위유족 증가로 반영하였으며, 선순위유족은 자녀 비중이 높아 사망률을 고려하지 않음
 4) 국가유공자 수는 본인+수권배우자+선순위유족으로 산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최근 5년간 평균 신규수상자수는 무공포장은 1명, 보국포장 389명이며, 이 중 국가유공자 등록률을 적용한 신규 국가유공자 수는 무공포장 0명, 보국포장 281명임

나. 생활조정수당

(1) 지원단가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국가보훈부는 2024년 현재 가구원수를 3명 이하 및 4명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40% 이하, 50% 이하로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생활조정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있음

[표 7] 생활조정수당 가구원수별, 소득수준별 월지급액: 2020~2024년

(단위: 천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3명 이하	50% 이하	214	220	220	220	242	3.1
	40% 이하	245	252	252	252	277	3.1
	32% 이하	275	283	283	283	311	3.1
4명 이상	50% 이하	265	273	273	273	300	3.1
	40% 이하	296	305	305	305	336	3.2
	32% 이하	326	336	336	336	370	3.2

주: 소득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가구당 가계지출비 대비 소득인정액 비율을,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 비율을 의미

자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를 참고하여 제작성

- (월 지급단가) 2024년 생활조정수당 월 지급액에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지급단가를 추정

[표 8] 생활조정수당 가구원수별, 소득수준별 월지급액 추정: 2026~2030년

(단위: 천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3명 이하	50% 이하	258	266	274	283	292	3.1
	40% 이하	295	304	313	323	333	3.1
	32% 이하	331	341	352	363	374	3.1
4명 이상	50% 이하	319	329	339	350	361	3.1
	40% 이하	358	370	382	394	407	3.2
	32% 이하	394	407	420	434	448	3.2

주: 소득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가구당 가계지출비 대비 소득인정액 비율을,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 비율을 의미

자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를 참고하여 제작성

(2) 지원대상

- 가구원수별, 소득수준별 무공·보국수훈자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비율을 고려하여, 무공·보국포장 수상자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수를 추정
 - 가구원수별, 소득수준별 무공·보국수훈자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수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음

[표 9] 가구원수별, 소득수준별 무공·보국수훈자 생활조정수당 수급인원: 2019~2025.1월
(단위: 명, %)

가구원수	소득기준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증가율 (2019~2023)
평이하	50% 이하	175	210	286	306	265	1,887	2,500	10.9
	40% 이하	407	483	501	489	576	713	701	9.1
	32% 이하	2,788	3,033	3,784	4,607	5,063	5,931	6,149	16.1
평이상	50% 이하	19	20	24	14	12	74	99	-10.9
	40% 이하	27	30	27	30	31	28	25	3.5
	32% 이하	59	56	68	77	82	84	83	8.6
합계		3,475	3,832	4,690	5,523	6,029	8,717	9,557	14.8

주: 2024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로 생활조정수당 수급인원이 크게 증가하여, 연평균증가율은 제도변화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인원 변화를 배제하기 위해 2019~2023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산정함

자료: 국가보훈부

- 2025년 1월 기준 전체 무공·보국수훈자 중 가구원수별, 소득수준별 무공·보국수훈자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수 비율을 적용하여, 무공·보국포장 수상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자의 가구원수별, 소득수준별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수를 추정

[표 10] 무공·보국포장 수상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수 추정

(단위: 명, %)

구분		무공보국훈장 조정수당인원	무공보국훈장 국가유공자 수	수급비율	무공·보국포장 인원	무공·보국포장 국가유공자 수
3인	50% 이하	2,500	139,008	1.80%	356	19,767
	40% 이하	702		0.51%	100	
	30% 이하	6,149		4.42%	874	
4인	50% 이하	99		0.07%	14	
	40% 이하	25		0.02%	4	
	30% ⁵⁾ 이하	91		0.07%	12	

주: 2025년말 무공·보국포장 국가유공자 수 추정 인원을 2025년 1월 기준 무공·보국훈장 가구원수별·소득
수준별 비율로 분류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기준 무공·보국포장 수상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수에 가구원
수별, 소득수준별 무공·보국수훈자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무공·보국포장 수상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수를
추정
 - － 2024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로 생활조정수당 수급인원이 크게 증가하
여, 연평균증가율은 제도변화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인원 변화를 배제하기 위해
2019~2023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함

[표 11] 무공·보국포장 수상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

가구원수	소득기준	2026	2027	2028	2029	2030
3명 이하	50% 이하	395	438	486	539	598
	40% 이하	109	119	130	142	155
	32% 이하	1,015	1,178	1,367	1,587	1,842
4명 이상	50% 이하	12	11	10	9	8
	40% 이하	4	4	4	4	4
	32% 이하	13	14	15	16	17
합계		1,548	1,764	2,012	2,297	2,624

주: 소득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가구당 가계지출비 대비 소득인정액 비율을,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 비율을 의미
자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를 참고하여 재작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시행 2024.1.12.)으로 30%에서 32%
로 변경

(3) 추계결과

- 생활조정수당 월 지급단가에 지급대상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

[표 12] 생활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추가재정소요	5,765	6,781	7,995	9,433	11,127	41,1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보훈병원 진료(안 제4조 및 현행법 제42조)

- 개정안에 따라 무공·보국포장 수상자를 국가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진료지원 대상에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 (진료지원 단가 등)보훈병원 진료지원의 경우, 무공·보국포장 수상자에 대해 비상이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조건과 동일하게 진료비의 60%를 감면하는 것으로 가정

[표 13] 비상이유공자 및 유가족의 보훈병원 진료지원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원액(백만원)	43,631	45,807	48,323	48,629	53,878
진료연인원(명)	810,020	727,393	750,428	728,030	801,171
의료지원대상자(명)	1,306,981	1,309,021	1,305,069	1,304,985	1,308,232
수진횟수(회)	0.6	0.6	0.6	0.6	0.6
진료단가(원)	53,864	62,974	64,394	66,795	67,249

자료: 국가보훈부

- 2023년 진료단가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진료단가를 산정하고, 수진횟수는 2023년 실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표 14] 보훈병원 진료단가 및 수진횟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회, 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㉞ 수진횟수 (회)	입원	0.1	0.1	0.1	0.1	0.1
	외래	0.5	0.5	0.5	0.5	0.5
	약제	0.5	0.5	0.5	0.5	0.5
㉟ 진료단가 (원)	입원	41,920	42,800	43,699	44,617	45,554
	외래	28,658	29,603	30,580	31,589	32,632
	약제	53,554	55,268	57,036	58,861	60,74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원대상) 보훈병원 진료지원 대상은 무공·보국포장 수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선순위유족 1명으로 [표 6]의 무공포장 및 보국포장 포상 인원 및 국가유공자 등록자 수에 지원배우자를 포함

[표 15] 보훈병원 진료지원 대상자 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무공포장	본인(A)	456	408	361	314	269
	지원배우자(B)	390	374	357	338	317
	수권배우자(C)	1,314	1,261	1,202	1,137	1,067
	선순위유족(D)	2,555	2,614	2,680	2,753	2,832
	소계(A+B+C+D)	4,715	4,657	4,600	4,542	4,485
보국포장	본인(E)	13,125	13,246	13,366	13,484	13,601
	지원배우자(F)	11,012	11,113	11,214	11,313	11,411
	수권배우자(G)	1,904	2,048	2,188	2,324	2,456
	선순위유족(H)	683	721	760	797	834
	국가유공자 소계(E+G+H)	15,712	16,015	16,314	16,605	16,891
	소계(E+F+G+H)	26,724	27,129	27,528	27,918	28,302
합계		31,439	31,786	32,128	32,460	32,787

- 주: 1) 지원배우자는 유공자 생존시에도 지원하는 경우이며, 수권배우자는 유공자 사망시 지정되며, 지원배우자수는 통계청의 연령대별 유배우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2) 2025년 1월 기준 무공수훈자 평균연령 84세 및 보국수훈자 평균연령 74세, 배우자와의 평균 연령 차이 3세로 가정하여 통계청의 사망률과 최근 5년간 평균 신규 수상자 수를 적용하여 추정
 3) 수상자 본인 사망자 수는 다음년도 수권배우자 증가로, 지원배우자와 수권배우자를 합한 배우자 사망자 수는 다음연도 선순위유족 증가로 반영하였으며, 선순위유족은 자녀 비중이 높아 사망률을 고려하지 않음
 4) 국가유공자 수는 본인+수권배우자+선순위유족으로 산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가재정소요) 대상자 수에 수진횟수, 진료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추가 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

[표 16] 보훈병원 진료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계
추가재정소요	입원	132	136	140	145	149	702
	외래	450	470	491	513	535	2,459
	약제	842	878	916	955	996	4,587
	합계	1,424	1,484	1,547	1,613	1,680	7,74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대부지원(안 제4조 및 현행법 제45조)

- (지원단가 등) 추계기간의 대부지원 단가 및 대부지원율은 최근 5년간 평균을 적용하고, 이차보전율은 2025년 예산 이차보전율을 적용

[표 17]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단가

(단위: 명, %)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직접 대부	대부인원	4,896	4,369	4,232	4,519	4,774	4,558
	대부금액	25,728	21,795	28,691	26,654	24,972	25,568
	대부지원 단가	5.3	5.0	6.8	5.9	5.2	5.6
위탁 대부	대부인원	24,292	24,214	21,608	22,742	25,145	23,600
	대부금액	166,291	172,453	177,590	184,806	206,779	181,584
	대부지원 단가	6.8	7.1	8.2	8.1	8.2	7.7

자료: 국가보훈부

[표 18]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대상인원 대비 대부인원 비율

(단위: 명, %)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직접 대부	대부지원 대상인원	401,889	406,319	415,226	422,374	429,883	415,138
	대부인원	4,896	4,369	4,232	4,519	4,774	4,558
	대부지원율	1.22	1.08	1.02	1.07	1.11	1.10%
위탁 대부	대부지원 대상인원	401,889	406,319	415,226	422,374	429,883	415,138
	대부인원	24,292	24,214	21,608	22,742	25,145	23,600
	대부지원율	6.04	5.96	5.20	5.38	5.85	5.68%

자료: 국가보훈부

□ (추가재정소요) 국가유공자 등록인원에 대부지원율, 대부단가, 이차보전율을 곱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

[표 19] 대부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명, %,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국가유공자 등록인원(A)		20,037	20,299	20,557	20,809	21,059	—
직접 대부 융자	대부지원율(B)	1.10%	1.10%	1.10%	1.10%	1.10%	—
	대부단가(C)	5.6	5.6	5.6	5.6	5.6	—
	직접대부금액(D=A×B×C)	1,234	1,250	1,266	1,282	1,297	6,330
위탁 대부 이차 보전	대부지원율(E)	5.68%	5.68%	5.68%	5.68%	5.68%	—
	대부단가(F)	7.7	7.7	7.7	7.7	7.7	—
	이차보전율(G)	1.80%	1.80%	1.80%	1.80%	1.80%	—
	위탁대부금액(H=A×E×F×G)	158	160	162	164	166	809
추가재정소요(I=D+H)		1,392	1,410	1,428	1,446	1,463	7,13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보훈재가복지서비스(안 제4조 및 현행법 제63조의3)

- (지원단가)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단가는 2023년 지원단가에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감율 5.9%를 적용하여 추정

[표 20]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감율
지원 대상자	15,895	15,954	15,984	13,052	11,813	-
소요비용	42,487	43,633	43,709	42,225	40,627	-
지원단가	2.7	2.7	2.7	3.2	3.4	5.9

자료: 국가보훈부

- (지원대상) 최근 5년간 무공·보국수훈자 중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은 인원 비율 1.14%⁶⁾를 적용하여 무공·보국포장 수상자 중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을 대상을 추정
- (추가재정소요) 지원대상에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

[표 21]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명, %,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원대상	358	362	366	370	374	-
지원단가	4.0	4.2	4.4	4.7	5.0	-
추가재정소요	1,434	1,522	1,612	1,739	1,869	8,17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1,587명(최근 5년 평균 재가복지지원 인원) ÷ 138,754명(무공·보국수훈자) = 1.14%

바. 교육지원(안 제4조 및 제22조, 현행법 제25조 및 제26조)

- (지원단가) 지원단가는 무공·보국수훈자의 교육지원 단가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율 2.3%를 적용하여 추정

[표 22] 무공·보국수훈자 교육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감율
지원인원	421	413	480	469	389	-2.0
소요비용	629	588	728	740	636	0.3
지원단가	1.49	1.42	1.52	1.58	1.63	2.3

자료: 국가보훈부

- (지원대상) 최근 5년간 무공·보국수훈자 중 교육지원을 받은 인원 비율 0.31%⁷⁾를 적용하여 무공·보국포장 수상자 중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을 추정
- (추가재정소요) 지원대상에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

[표 23] 교육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명, %,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원대상	63	63	64	65	66	-
지원단가	1.74	1.78	1.82	1.87	1.91	-
추가재정소요	110	112	117	121	126	58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사.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무공·보국포장 수상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할 경우, 생활조정수당, 보훈병원 진료, 대부지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교육지원 등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647억 5,000만원(연평균 129억 5,000만원)으로 추계됨

7) 434명(최근 5년 평균 교육지원 인원) ÷ 138,754명(무공·보국수훈자) = 0.31%

[표 24]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생활조정수당	5,765	6,781	7,995	9,433	11,127	41,101	8,220
보훈병원 진료	1,424	1,484	1,547	1,613	1,680	7,748	1,550
대부지원	1,392	1,410	1,428	1,446	1,463	7,139	1,428
보훈재가복지서비스	1,434	1,522	1,612	1,739	1,869	8,176	1,635
교육지원	110	112	117	121	126	586	117
합계	10,125	11,309	12,699	14,352	16,265	64,750	12,9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무공·보국포장 수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록자 수를 무공·보국 수훈자의 국가유공자 등록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